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020399(본소), 2015나2020405(반소) 판결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존재확인 등 · 매매대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020399(본소), 2015나2020405(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가합557754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참존모터스

변론 종결 2015. 9. 24.

판결 선고 2015. 11.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가합557754(본소), 2014
가합590874(반소)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04. 10. 5.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4. 11. 14.자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별지 목록 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964,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4면 바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그 다음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하며, 6면 17, 18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쓰는 부분

"원고들이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조서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달 19.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대체집행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5. 1. 6. 원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75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7. 패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2015. 6.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계고를 받았고, 다시 같은 달 11. 원고들로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 후 그 비용 371,250,000원을 부담시키겠다는 통지까지 받게 되자,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김영식

판사장윤선

별지